

**언론이 법정기록을 통해 입수한 강간희생자의
성명을 공표한 데 대한 사생활권 침해여부**

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S., 469.95 S. Ct, 1029,43L, Ed, 2d 328. (1975)

조지아 주에서 콘(Cohn)씨의 17 살난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지아 주에서는 언론이 봉옥당한 귀녀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Ga Code Ann. §26-9901 참고). 이와 비슷한 규정은 몇 개의 다른 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소년의 신원은 사건 당시에는 공표되지 않았다. 사건발생 8개월 후 상고인인 콕스방송사의 기자이자, 그 자신이 상고인 이기도 한 왓셀(Wassell)이 강간 및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여섯 명의 청년을 심리하는 법정에 참석해서, 기소상을 열람하면서 피살자의 성명을 알아냈다. 그 후 소녀의 성명을 밝힌 내용이 방송되었다. 조지아 주 대법원은, 피고인 콕스 방송사는 피살된 소녀의 아버지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피고가 항전의 근거로 삼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주장은 기각되었다. 그 근거는, 조지아 주의 법은 봉옥당한 희생자의 성명은 공공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원칙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상고심에서, 연방대 법원은 법정의 재량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최종판결로 확정 지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를 문제삼았다. 화이트 판사(Justice White)는 다음과 같은 법정의 견해를 밝혔다. 조지아 주에서는 법조항 §26-9901 에 대한 위법행위와 이번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지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 누구에게나 사생활영역이 있으며, 또 주는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워렌과 브랜바이즈(Warren & Brandeis) 판사가 쓴 사생활권(The Right to Privacy, 1890)의 중심주제는, 언론이 사적 정보를 지나치게 공표함으로써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있어, 이러한 남용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금세기동안 우리는 소위 사생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가항력적인 경향을 경험해 왔다. 그런데 사생활을 침해받은 자의 소송대상은 정보의 공표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특정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사생활권의 구제는 대부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충돌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 상고인은, 언론보도가 개인의 명성을 침해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허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정확한 보도라는 이유에서도 언론이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법정에 대해 너그러운 판결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수정헌법 제 1 조와 14 조에 의거, 진실된 공표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의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주가 언론의 부당한 공표로부터 사생활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언론과 사생활권 간의 충돌문제에 국한해서 논의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주에서 공개된 기록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개된 법정자료에서 입수한 강간희생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보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첫째, 개개인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수단이 제한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편리하게 정부활동을 감시하려면 언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뉴스매체는 정치활동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개된 공적 기록물과 서류는 정치활동을 반영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언론의 정보 제공 없이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활동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재판진행에 있어서, 언론은 공정재판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또 재판진행에 대한 공중의 감시효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 [Sheppard v. Maxwell, 384U.S. 333, 350 (1966) 참고] 피상고인은 소송장에서, 그의 딸이 강간희생자라는 사실이 방송됨으로써 그의 사생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발생과 그에 대한 기소,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명백히 공공관심사 이므로 이에 대한 보도는 정부의 활동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감제에 해당한다. 재판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차 인정되어 왔다. 더글라스 판사(Justice Douglas)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법정의 심리는 공적 사건이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공중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다. 만일 재판기록물이 공표된 다면, 판사는 이에 대해 공표자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사나 배심원 또는 판사 자신이 법정의 명예를 손상했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법정에서의 일을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지 않고도 그것을 보도할 수 있다. 민주정부의 여타 기관들과 달리 사법부만이 재판 중에 전달된 사항을 규제하고 검열할 어떠한 특별한 재량은 없다』 [Craig v. Harney, 331 U.S. 367, 374(1947) 참고] 사생활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이 발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절차를 보도할 언론의 특권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워렌과 브랜다이즈 판사의 책에서도 그러한 공표가 특권에 속할 때에는, 사생활권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사생활권은 정에서 행해진 어떠한 공표로써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판에 관한 보도는 특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생활권의 침해에 관한 현행법을 보더라도 문제가 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기록물일 때는 사생활상의 이익은 주장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나 14 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공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조지아 주에서 강간희생자의 이름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사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한 근거는 순전히 공표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그 밖에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행위나 비언어적인 요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U.S v. O'Brien, 391 U.S. 367, 376-377(1968) 참고] 공개된 기록물을 이용하여 진실되게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데 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에서, 사회적 질서나 윤리에 우선할 만한 사회적 가치도 경미한 불필요한 어치처럼 규제되어야 할 표현의 범주에 드는 것도 아니다[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2 (1942) 참고]

조지아 주에서는, 법정의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공적 기록은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흥미로운 것이며, 언론이

기록물의 진실된 내용을 보도할 때 공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특히 시민이 공공간제를 최종 판단할 자라고 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공표할 언론의 자유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제 1 조나 14 조에서도, 주는 공중에게 공개된 법정기록물에 나타난 정보를 진실되게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마지못해 언론이 공적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침해사실이 있을 때는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으로 언론은 간혹 시민에게 공적인 문제를 전달하기가 어렵게 되지만 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는다. 그 규정으로 해서 언론은 소심해져서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또 그렇지 않으면 공표되거나 공중이 알아야만 할 사항들을 규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적어도 수정헌법 제 1 조와 14 조는 법정의 기록물을 공중에게 진실하게 보도하는 언론에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만일 재판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상의 이익문제가 있다면 주는 공중이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주정부는 사생활상의 이익과 공중이 알아야 하는 이익의 문제 모두를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일단 공개된 법정에서 법정기록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노출된 이상, 언론이 그것을 공표하는데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도 무엇을 기사화하고 방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언론인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또 믿어야만 한다.(Miami Herald Pub. Co. v. Tornillo, 418 U.S. 참고) 상고인인 왓셀은 그가 방송한 기사는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기록들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이며 또 희생자의 성명은 심리 중 휴회시에 그가 요청하여 입수한 기소상에서 안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상고인은, 희생자의 성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라든지 또는 그것은 공개된 법정기록물을 통해 입수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해 볼 때 수정헌법 제 1 조나 기초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지아 주가 상고인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버거 수석관사(Chief Justice Burger)는 이같은 판결에 동의 했다. 한편 포웰 판사(Justice Powell)는 판결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 본인은 수정헌법 제 1 조는, 공개된 법정의 기록물에 나타난 사항을 진실되게 보도한 것에 대해 사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본 법정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진실성 여부가 크게 문제된다고 본다.』 더글라스 판사(Justice Douglas)도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본인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아울러 조지아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는 견해에도 동의한다주정부가 그날의 뉴스공표를 규제할 재량권은 없다.』 한편 렌퀴스트 판사(Justice Rehnquist)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은 이번 상고심의 결정의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상고를 각하하고자 한다. 』